

직 제 규 정 [1995. 2. 10 규정 제2호]

일부개정	1995. 12. 12	규정 제 10호
	1996. 3. 28	규정 제 15호
	1996. 12. 9	규정 제 21호
	1997. 12. 19	규정 제 25호
	1998. 2. 27	규정 제 29호
	1998. 12. 22	규정 제 33호
	1999. 2. 4	규정 제 36호
	1999. 5. 29	규정 제 42호
	2000. 1. 12	규정 제 47호
	2000. 12. 30	규정 제 51호
	2001. 4. 6	정관 제 15호
	2001. 4. 6	규정 제 54호
	2001. 7. 9	규정 제 57호
	2001. 12. 24	규정 제 59호
	2002. 2. 7	규정 제 62호
	2002. 8. 23	규정 제 64호
	2002. 12. 11	규정 제 67호
	2003. 7. 10	규정 제 73호
	2003. 11. 26	규정 제 77호
	2003. 12. 10	규정 제 78호
	2004. 7. 30	규정 제 85호
	2004. 11. 24	규정 제 88호
	2005. 3. 5	규정 제 90호
	2005. 12. 20	규정 제 94호
	2006. 3. 22	규정 제 97호
	2006. 12. 21	규정 제100호
	2008. 2. 12	규정 제106호
	2008. 7. 24	규정 제108호
	2008. 11. 24	규정 제110호
	2009. 12. 3	규정 제116호
	2010. 4. 28	규정 제123호
	2011. 12. 2	규정 제135호
	2012. 3. 28	규정 제140호
	2013. 1. 25	규정 제146호
	2014. 3. 7	규정 제149호
	2014. 12.17	규정 제150호
	2015. 4. 7	규정 제152호
	2016. 12. 24	규정 제153호
	2017. 2. 27	규정 제159호
	2018. 2. 12	규정 제163호
	2018. 4. 1	규정 제164호
	2018. 4. 11	규정 제166호
	2019. 6. 11	규정 제170호
	2020. 8. 25	규정 제175호
	2021. 4. 1	규정 제178호
	2023. 6. 1	규정 제186호
	2023. 10. 1	규정 제193호
	2023. 12. 4	규정 제197호
	2024. 4. 1	규정 제200호
	2024. 8. 21	규정 제204호
	2025. 4. 1	규정 제206호
전부개정	2025. 6. 30	규정 제209호
	2025. 11.19	규정 제210호
	2025. 12.11	규정 제212호
	2026. 4. 15	규정 제213호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경기연구원(이하“연구원”이라 한다)의 조직과 업무분장을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연구원의 직제에 관하여는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.

제2장 조 직

제3조(원장) ①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고, 업무를 통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·감독하고, 직속 조직으로 북부발전연구실, 미래전략연구실, 감사실을 둔다. (개정 2025.12.11.)

② 북부발전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(개정 2025.12.11.)

1. 경기북부지역 산업·규제, 안보·평화, 도시·환경 관련 연구
2. 경기북부지역 균형발전 및 지역개발 관련 연구
3. 경기도 국제교류 및 지방외교 관련 연구
4.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정책 연구
5. DMZ 및 접경지역 정책 연구

③ 미래전략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(신설 2025.12.11.)

1. 도정 중점과제 관련 연구
2. 도정 현안, 미래 이슈 발굴 및 분석

④ 감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(신설 2025.12.11.)

1. 자체감사 및 외부감사 수감 업무
2. 윤리경영 및 임직원행동강령 업무
3. 기타 청렴도 조사 등

제4조(부원장) ①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고, 선임연구위원급으로 임명한다. (개정 2026.4.15.)

②부원장 밑에는 연구기획실, 산업통상연구실, 인구사회연구실, 기후환경에너지연구실, 자치혁신연구실, 도시주택연구실, 모빌리티연구실, AI연구실, 경기의정연구센터, 행정지원실을 둔다.

③ 연구기획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각 연구실의 도정협력 총괄
2.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기획·조정
3. 연구사업 기획, 조정 및 관리
4. 경영평가, 의회 및 기관협력
5. 행정사무감사, 업무보고
6. 홍보전략, SNS 및 정책세미나

7. 보고서 등 각종 출판물의 발간
8. 기타 원장이 부여하는 연구기획에 관한 업무
- ④ 산업통상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 한다.
 1. 산업 정책 및 산업 입지 관련 연구
 2. 통상 및 국제경제 관련 연구
 3. 지역경제 관련 연구
 4. 노동, 고용 및 공공경제 정책 관련 연구
 5. 국내외 경제 동향 분석
- ⑤ 인구사회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 한다.
 1. 저출생·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및 인구정책 관련 연구
 2. 청년·고령층·이주민 등 인구집단별 정책 연구
 3. 사회, 복지, 사회적 경제 정책 관련 연구
 4. 여가 및 관광 정책 등 삶의 질 향상 관련 연구
 5. 기타 인구 및 사회 관련 현안에 관한 연구
- ⑥ 기후환경에너지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 한다.
 1.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 연구
 2. 지속가능발전과 녹색경제 연구
 3. 대기 및 유해물질 관리 연구
 4. 수환경, 상·하수 정책 연구
 5. 폐기물 및 자원순환 연구
 6. 자연환경과 공원·녹지 연구
 7. 환경안전 및 보건 연구
- ⑦ 자치혁신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 한다.
 1. 지방자치·지방분권분야 비전연구 및 현안대응
 2. 지방재정 확충과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
 3. 조직·인사분야 경쟁력 강화방안 및 효율적 경영기법 연구
 4.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평가제도 연구
- ⑧ 도시주택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 한다.
 1. 국토 및 지역정책 및 제도 연구
 2.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연구
 3. 도시재생 등 정책 및 계획 연구
 4. 주택정책 및 계획 연구
 5. 도시설계 및 건축 정책 연구
 6. 공간정보 및 스마트시티 정책 연구
- ⑨ 모빌리티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 한다.

1. 교통계획 및 대중교통 연구
2. 교통공학 및 교통안전 연구
3. 첨단교통 및 모빌리티 서비스 연구
4. 지속가능한 친환경 교통 연구
5. 교통약자 및 교통복지 연구
6. 교통물류 연구

⑩ AI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AI 산업 및 데이터, 법·제도 관련 연구
2. AI의 경제·사회적 영향에 관한 연구
3. AI 관련 조사 및 분석
4. 글로벌 AI 동향분석 및 정책 연구
5. AI 등 미래 신기술 관련 정책 연구

⑪ 경기의정연구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정책 및 제도연구
2. 현안분석 과제 수행
3. 경기의정포럼 운영
4. 지역현안토론회 운영

⑫ 행정지원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이사회운영 및 규정관리
2. 인사, 평가, 복무, 복지, 교육훈련
3. 노무, 보수, 성과급, 퇴직금
4. 예·결산 및 회계업무, 계약 및 입찰
5. 출납 및 세무, 자금 및 기금운영
6. 정보화기획 및 정보보안, 정보시스템 운영
7. 자료실(전자도서관) 운영관리 및 기록물관리
8. 자산관리 및 산업안전보건

[전문개정 2025.12.11.]

제5조(실, 센터장의 직급)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2항 직위의 직급은 다음과 각 호와 같이 임명한다.

1. 실장, 센터장(단, 연구실 부설 센터장 제외) : 연구위원급 이상
2. 행정지원실장, 감사실장 : 선임연구위원급 또는 행정 1급 이상

[전문개정 2025.12.11.]

제6조(하부조직 분장사무)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하부조직과 분장사무에 관하여는 원장이 따로 정한다. (신설 2025.12.11.)

제7조(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) 정관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부설기관으로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원장 직속으로 두며 운영규정은 별도로 정한다.

[제6조에서 이동(2025.12.11.)]

제8조(한시조직 등) ①특정분야의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시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.

②한시조직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.

[제7조에서 이동(2025.12.11.)]

제3장 직 원

제9조(기구 및 정원) ①연구원의 기구는 별표1과 같고 직급 및 정원은 별표2와 같다. (개정 2025.12.11.)

②각 부서별 정원은 총 정원 범위 안에서 원장이 정한다.

[제8조에서 이동(2025.12.11.)]

제10조(계약직 직원 등) ①원장은 연구과제의 효과적인 수행, 휴직자 대체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계약 또는 임시로 직원 등을 채용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.

②제1항에 따른 직원 등의 임면, 보수, 복무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.

[제9조에서 이동(2025.12.11.)]

제4장 직무대행

제11조(직무대행) ①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 제16조제3항 및 제25조제1항의 직제 순서에 따라 그 권한을 대행한다. (개정 2025.12.11.)

②직무대행의 임기는 신임 원장 임용전까지로 한다.

[제10조에서 이동(2025.12.11.)]

제12조(겸임) 원장은 필요에 따라 직원을 현재 직위 이외에 원내의 다른 직위 또는 직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.

[제11조에서 이동(2025.12.11.)]

부 칙(2025. 6. 30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정의 개정) ①인사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2 제1항 중 “직제규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직제규정 제9조에 의한”으로 한다.

제14조 제1항 중 “부원장, 본부장, 감사실장”을 “정관 제26조 제1항의 임기제 직원”으로 한다.

제61조 제3항 중 “위원은 기획조정본부장과 직원 중에서”를 “위원은 직원 중에서”로 한다.

제61조 제5항 중 “기획조정본부장,”을 삭제한다.

제68조 제2항의 “인사총무부 직원”을 “행정지원실 직원”으로 한다.

[별표 1] 직급별 직원임용자격기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1. 부원장, 실장

직 위	임 용 자 격 기 준
부원장, 연구기획실장, 산업통상연구실장, 인구사회연구실장, 기후환경에너지연구실장, 자치혁신연구실장, 도시주택연구실장, 모빌리티연구실장, AI연구실장, 북부발전연구실장, 미래전략연구실장	가. 공무직위에 대한 이해도와 조직 운영 능력, 대외적 대응능력 등이 탁월한 자 나. 연구원에서 선임연구위원급 이상으로 근무한 자 다. 위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감사실장, 행정지원실장	가. 공무직위에 대한 이해도와 조직 운영 능력, 대외적 대응능력 등이 탁월한 자 나. 연구원에서 선임연구위원급 또는 행정직 1급 이상으로 근무한 자 다. 위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
②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 중“원장, 부원장, 본부장, 감사실장 및 연구직”을 “원장, 정관 제26조 제1항의 임기제 직원 및 연구직”으로 한다.

제13조 제2항 중 “부원장 및 본부장, 감사실장”을 “정관 제26조 제1항의 임기제 직원”으로 한다.

제14조 제2항 중 “부원장, 본부장, 감사실장 및 연구직”을 “정관 제26조 제1항의 임기제 직원 및 연구직”으로 한다.

③재무회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, 제21조, 제73조, 제109조, [별지 제21호] 중 “기획조정본부장”을 “행정지원실장”으로 한다.

제14조, 제15조, 제16조, 제18조, 제19조, 제20조, 제23조, 제27조, 제28조, 제29조, [별지 제10호], [별지 제11호] 중 “기획조정본부장”을 “연구기획실장”으로 한다.

제24조 본문의 “부원장·본부장·실장·센터장·부장”을 “부원장·실장·부장”하고, 제2호의 “본부장”을 “행정지원실장”으로 하며, 제3호의 “실장·센터장·부장”을 “ 실장·부장”한다.

제86조 제1호 중 “기획조정본부장”을 “행정지원실장”으로 하고, 제2호 중 “재무관리부장”을 “디지털경영부장”으로 한다.

④ 기금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2 제2항 중 “기획조정본부장”을 “행정지원실장”으로 한다.

⑤ 연구사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, 제8조, 제9조 중 “ 기획조정본부장”을 “연구기획실장”으로 한다.

부 칙(2025. 11. 19.)

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5. 12. 11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**제2조**(다른 규정의 개정) ①인사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2 제1항 중 “직제규정 제9조에 의한”을 “직제규정 제10조에 의한”으로 한다.

별표 1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직급별 직원임용자격기준(제7조 관련)

1. 부원장, 실장, 센터장(단, 연구실 부설 센터장 제외)

직 위	임 용 자 격 기 준
부원장	가. 공모직위에 대한 이해도와 조직 운영 능력, 대외적 대응능력 등이 탁월한 자 나. 연구원에서 선임연구위원급 이상으로 근무한 자 다. 위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연구기획실장, 산업통상연구실장, 인구사회연구실장, 기후환경에너지연구실장, 자치혁신연구실장, 도시주택연구실장, 모빌리티연구실장, AI연구실장, 경기의정연구센터장, 북부발전연구실장, 미래전략연구실장	가. 공모직위에 대한 이해도와 조직 운영 능력, 대외적 대응능력 등이 탁월한 자 나. 연구원에서 연구위원급 이상으로 근무한 자 다. 위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감사실장, 행정지원실장	가. 공모직위에 대한 이해도와 조직 운영 능력, 대외적 대응능력 등이 탁월한 자 나. 연구원에서 선임연구위원급 또는 행정직 1급 이상으로 근무한 자 다. 위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
②재무회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 본문의 “부원장·실장·부장”을 “부원장·실장·센터장·부장(단, 연구실 부설 센터장 제외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의 “실장·부장”을 “실장·센터장·부장(단, 연구실 부설 센터장 제외)”으로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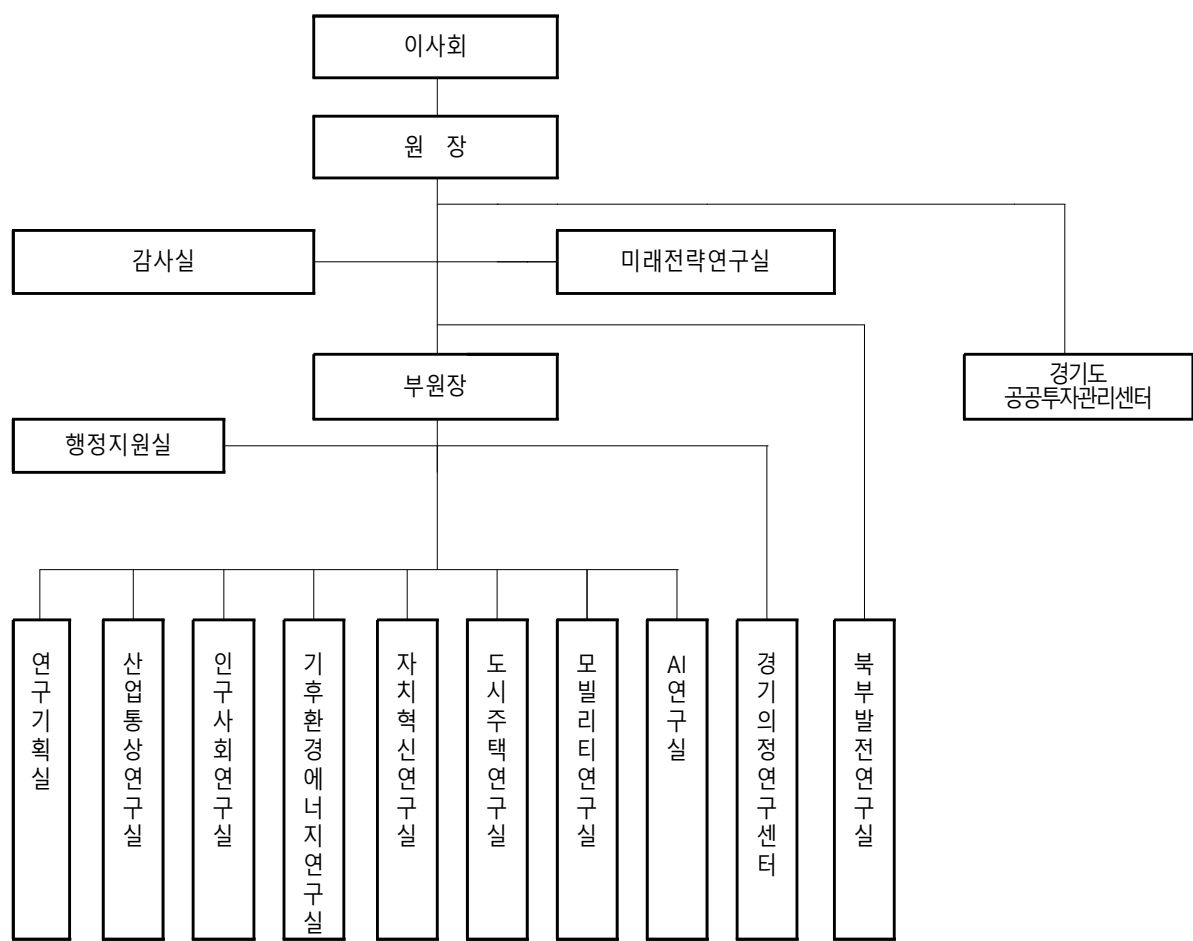
부 칙(2026.4.15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**제2조**(다른 규정의 개정) ①인사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제1호 부원장 임용자격기준 중 “나. 연구원에서 선임연구위원급 이상으로 근무한 자”를 “나. 연구원에서 선임연구위원급으로 근무한 자”로 한다.

[별표 1] (개정 2025.12.11.)

기 구 표(제9조 관련)



[별표 2] (개정 2025.11.19.)

직 급 및 정 원 표

[단위 : 명]

직종별	직 급 (위) 별	정 원
합 계		169
원 장		1
부 원 장		1
감사실장		1
연구직	계	68
	선임연구위원 ‘가’ 급	30
	선임연구위원 ‘나’ 급	
	연구위원 ‘가’ 급	38
	연구위원 ‘나’ 급	
행정직	계	36
	1 급	7
	2 급	
	3 급	29
	4 급	
	5 급	
	6 급	
	7 급	
공무직	계	62
	연구원	56
	행정원	6

※ 직급별 명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.